

SEP 2023. Issue 178

ZOOM 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Where Is Grace Chang?

03 ... 가족 Family

생각과 현실

06 ... 신한관세법인, 김희정 서울세관 관세조사팀장 영입

최신 관세 판례 분석

08 ... 쟁점물품(Reaction Vessels)을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027.9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HSK 제39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논리로 푸는 HS 사례

11 ... 스마트 플러그 품목분류

Global Customs Insight

14 ... WCO 품목분류동향

FTA 및 수출입 실무 안내

17 ... 원산지 검증 대비 서류 보관 가이드라인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

23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가족 Family



장 승 희
대표 관세사

'1년 365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 민족이 모두 함께 즐기는 가장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수기를 맞이하여 온갖 곡식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이지요. 올해에는 10월 3일 개천철의 전날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일이라는 긴 기간을 명절연휴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나누어 먹으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날이지요. 어린 시절에는 오랜만에 모인 일가친척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기쁨의 날들이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실천되는 하루였지요.

아버지께서 별세하시고 다가온 첫 명절입니다. 참으로 낯설은 명절입니다. 휴가를 떠난 도우미의 역할까지 하며 함께 모셔야 할 어른께서 안 계십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차례상을 차리러 가야 할 곳도 없어졌습니다. 다가오는 긴 연휴가 당황스러웠습니다. '뭐 하지?' '어떻게 보내야 하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여 모였던 가족들 모두 '어?어?' 하는 마음으로 두리번 두리번 합니다.

이번 달 생각과 현실은 '신한관세법인, 김희정 서울세관 관세조사팀장 영입' 입니다. 최신 관세 판례 분석은 '쟁점물품(Reaction Vessels)을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027.9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HSK 제39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이며, 논리로 푸는 HS 사례는 '스마트 플러그 품목분류'입니다. 또한 Global Customs Insight는 'WCO 품목분류동향'이며, FTA 수출입 실무 안내는 '원산지 검증 대비 서류 보관 가이드라인',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은 '자

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니다.

가족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들로 구성된 집단을 말합니다. 동일한 가족 관계 등록부 내에 있는 친족을 포함하기도 하며 같은 조직체에 속하여 있거나 뜻을 같이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호모사피엔스라 불리는 현생 인류는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며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집단으로 대응하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힘을 합해 사냥하였습니다. 힘 센 남성들을 중심으로 이동하며 그룹이 형성되었습니다.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경시대에 집단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 지역에 정착하며 부족을 형성하여 갔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하고 자식을 낳아가며 가족을 이루어 갔습니다.

가족이란 지반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일시적으로, 또는 특별한 경우에 가족과 떨어져 살기도 하지만 대부분 홀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혈연적 존재이며 **가족은 그 구성원에게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합니다. 싸우고, 지지고, 북아도... 움직일 수 없는 가족은 늘 내 곁에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나의 편이 되어주고 아플 때에 머리맡을 지켜줍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위로가 되어 줍니다. **가족이란 언제 어느때나 돌아가서 기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만들어 주신 부모님, 나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에게 도피성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족내에서 바른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맘에 든다고 가까이 하고, 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멀리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기 때문에 나와 다름이 더욱 잘 보입니다. 내 맘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맘에 들게 하기 위하여, 나 보기에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가족을 바꾸려고 하면 어려움이 커져갑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내 관점을 바꾸는 것이 평화롭고 빠른 길입니다. **‘사랑은 나 보기에 더 나은 사람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한번 붙든 사람과 끝까지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시대에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났습니다. 대가족은 해체되고 있고 부모와 자식만으로 이루어진 핵가족도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구성과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로 형성되는 2세대 가구에서도 다양한 형태들이 늘어났습니다. 비혈연, 비혼인 공동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가족으로서 지켜야 할 일은 나 보다 가족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있음으로 갖게 되는 안온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정보기기에서 고개를 들고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며 대화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내에서의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이웃과 사회로 올바른 관계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는 가족이 되려고 합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께도 이 땅에 함께 하는 가족들에게도...

가족과 함께 복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승희 드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4절)

*가족: 다음 DAUM 사전

**조정민, 매일기도(서울:두란노, 2021)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Seung-hee Chang*



생각과 현실

신한관세법인, 김희정 서울세관 관세조사팀장 영입

신한관세법인은 9월 11일 김희정 전 서울세관 관세조사팀장을 법률컨설팅분야 이사로 영입했습니다. 관세,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각종 관세조사와 FTA 검증 대응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고, 글로벌 기업의 리스크 감소와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김희정 이사는 약 20년간 관세청 및 세관에서 기업심사와 FTA 업무를 수행하며 관세평가 · 품목분류 · 외국환거래 · 원산지 등 통관적법성 분야의 다양한 업무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제약, 명품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수차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높은 전문성을 쌓아왔고, 조사 이후 기업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매니지먼트와 컨설팅을 제시해 왔습니다.



서 영 진

전무/관세사

wedin8@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김희정 이사는 앞으로 신한관세법인의 법률컨설팅 업무를 총괄하여 기업의 발전 및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자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산업의 특성에 맞춘 기업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기업의 운영 비효율성, 관세법상 부정적 요인 적발 등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세법상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 AEO 제도 등 기업에게 유용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시적기에 안내하고자 합니다.

학력

2000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6 안성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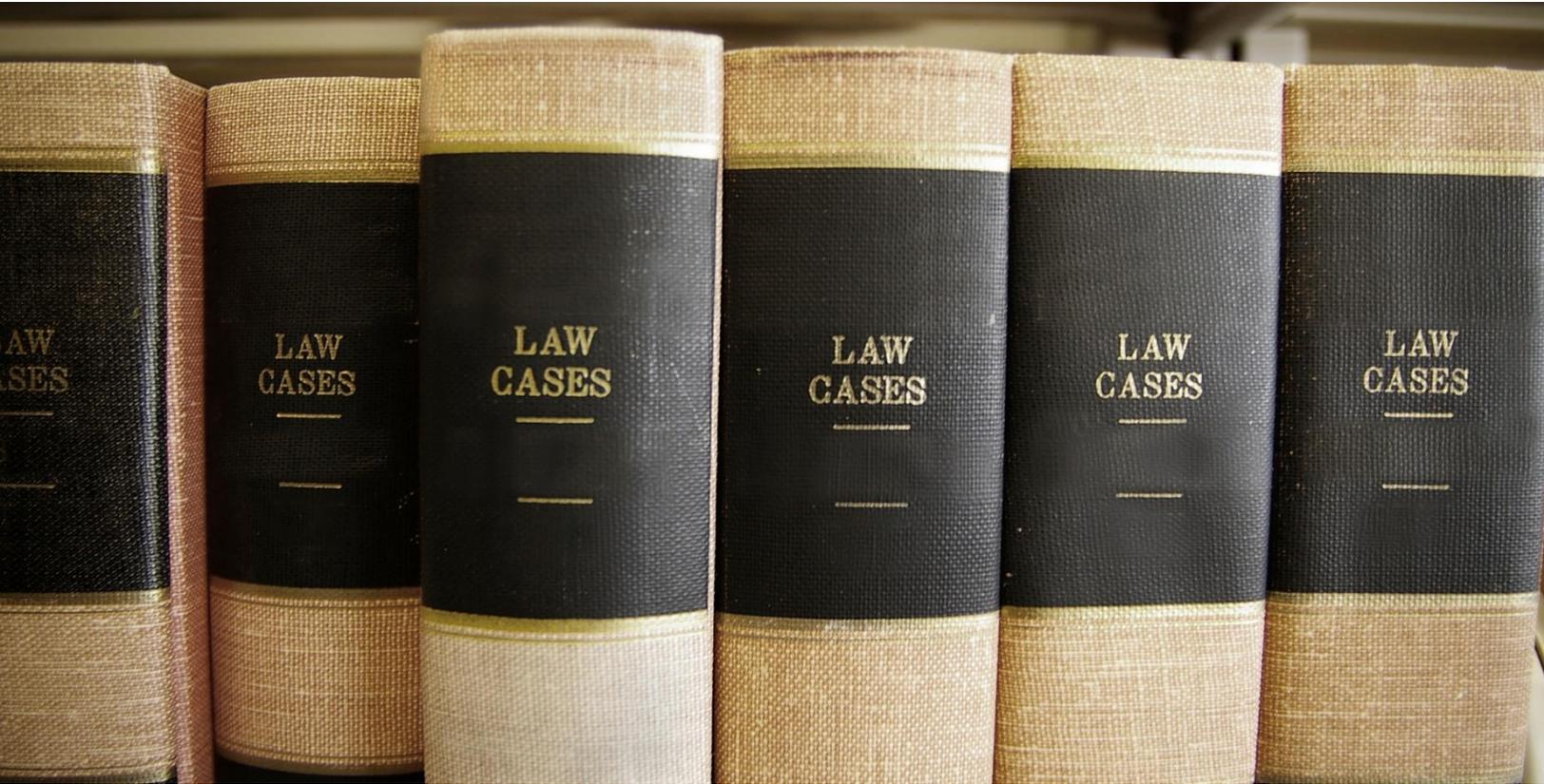
2000 제 17 회 관세사시험 합격

2001 관세직 7급 공채 합격

2010-2012 관세청 FTA 집행

2014-2023.8 서울세관 기업심사팀장

2023.9 신한관세법인 법률컨설팅팀 이사



최신 관세 판례 분석

**쟁점물품(Reaction Vessels)을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027.9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HSK 제39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특정 분석기기에만 전용되도록 특수한 재질과 형상으로 제작되어 그 특정 분석기기에만 전용되는 것이므로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027.90-9099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홍정화

관세사

jhhong@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2018.1.30.부터 2022.6.24.까지 OO에 소재한 OO(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OO(화학반응 용기 OO 등 2종,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 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 등 OO건으로 쟁점물품을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3926.90-9000호(WTO 협 정세율 6.5%)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함

나. 청구법인은 2022.12.20.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9027.90-9099호(양허관 세율 0%)의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OO원, 부가가치 세 OO원 합계 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13. 이를 거부함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3. 심판청구를 제기함

[판단]

쟁점물품은 분석기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용기로, 분석기기에 장착되어 기 기 내에서 분석을 수행하는 동안 분석대상물질을 용기에 보관하는 기능을 수행 하는 1회용 소모성 의료용 용기로서 용기 상단 부분에 측정 장비의 정확한 감 지 기능을 위해 링형 돌기가 형성되어 있고, 내부의 눈금이 있는 형상으로 제 작되었고 바닥면은 불순물 등의 제거를 용이하도록 특정 각도로 가공되어 있음.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분석기 기에 장착되어 분석대상물질의 수용 및 이동의 용도로 사용될 뿐, 쟁점물품이 분석기기 자체를 구성하거나 그 기능에 필수불가결하다거나 그 기능을 확장하 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분석기기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볼 수 없고, 쟁 점물품은 도구로 볼 수 있는데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도구를 제9027호에서 도 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제9027호로 분류할 수 없으므 로 제3926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 고,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분석기기에만 전용되도록 특수한 재 질과 형상으로 제작되었고, AAA 사의 면역분석 장비OO에만 전용 사용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분석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고, 쟁점물품을 부분품 으로 볼 수 없더라도 분석기기가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부속품으로 볼 여

지도 있으므로 제9027호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 3926호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조심 2023관0047 (결정일자: 2023-09-05)



논리로 푸는 HS 사례

스마트 플러그 품목분류

1. 개요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는 어느덧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개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IoT는 무선통신을 통해 각종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IoT기기들은 원격조종이나 타이머설정 등을 통해 본래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으므로 기존 제품보다 뛰어난 편의성을 지닙니다. 제품 자체적인 기능과 무선통신 기능이 결합된 IoT기기들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스마트 플러그 품목분류 사례를 통해 이해를 높이하고자 합니다.



조원희
관세사

whcho@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2. 품목분류 사례

1) 쟁점 HS CODE

HS CODE	제8536.50-9090호	제8537.10-5090호
세율	WTO협정세율 0%	기본세율 8%
호의 용어	그 밖의 개폐기(기타)	전기제어용의 것(기타)
세관장확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해당없음

2) 쟁점물품 설명

- (1)휴대폰과 연동되어 사물인터넷(IoT)에 사용되는 CPU-WiFi(one chip), 플러그, 스위치, 소켓, 릴레이 등으로 구성된 물품
- (2)전원접속, WiFi 통신기능, 전력량을 측정하고 원격으로 전원을 On/Off 하며, 대기전력 차단, 과부하 전력차단 등의 기능을 수행

3) 세관 결정사항

- (1)결정세번: 제8537.10-2090호 (2018년)
- (2)결정사유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 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패널(panel)·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관세율표 제8535호 및 제8536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앞에서 설명한 기기의 조립품(단순한 스위치 조립품은 제외한다)”을 제8537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사물인터넷(IoT)에 사용되어 전원에 접속하고, 전원을 On/Off 개폐하며, 과부하 전력차단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하고 있으며, 제8537호의 용어에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

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력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측정기능을 가진 본건 물품도 제8537호에 포함됨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원접속, 개폐(On/Off), 보호(자동차단) 등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서 기타 제어반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7.10-2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3과-2611 (시행일자: 2018.05.28)]

3. 결정에 대한 의견

위 결정으로 인해 기존에 제8536.50-9090호로 분류되었던 쟁점물품의 세번이 제8537.10-2090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제8537호에는 보드, 패널, 콘솔, 책상, 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이 분류되는데, 기타의 기반에 해당하는 분류사례를 보면 PCB보드, 탱크형, 박스형태 등이 있습니다. 제시된 물품은 플러그형태입니다. 그럼에도 쟁점물품이 제8537호로 분류된 이유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하고 있으면서 전력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측정기능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CBP 사례 중 측정기능이 없는 스마트플러그를 제8536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스마트플러그로서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하지 않은 것은 제8536호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위 사례는 제품 내부에 제8536호에 해당하는 부품이 두 가지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점점 복잡, 다양해지는 전자기기는 내부의 구성요소까지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Global Customs Insight
WCO 품목분류동향

최근 3월에 개최된 세계관세기구의 제71차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분류 결과 중 업무에 참고하기 좋은 사례를 위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오 규 태
지사장/관세사
ktoh@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컨설팅

1. 품목분류 사례 (스마트폰디스플레이 커버 글래스)

(1) 쟁점 HS CODE

HS	제7007.19	제8517.79
세율	기본세율 8%	기본세율 8% WTO협정관세 0%
호의용어	기타 안전유리	스마트폰용의 부분품
요건	없음	없음

(2) 제품설명

쟁점품목은 동금 직사각형 형태에(L:145.96mm X W:69.39mm) 카메라, 스피커, 홈버튼용 구멍이 각 각 3개씩 있는 투명 강화 안전유리이며 강화 공정 후 유리를 코팅하여 성능(적외선 선택성, 가시성, 지 문방지 등)을 향상하고 특정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에 결합할 품목임.



(3) 품목분류 결정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19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강화유리는 다음을 말한다. (1)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모양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중략...”이 유리는 위와 같은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성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 형상(곡면이나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4) 참고사항

금번 결정과 더불어 스마트 냉장고용 디스플레이 커버 글래스도 제7007.19호에 분류되었음.

품목분류 진행 시 특정 형태로 가공되었지만, 전용 부분품으로 갈 수 없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으며 해당 안건은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상정한 주제로 품목분류 시 호의 용어나 해설서 내용을 면밀하게 들여다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음

2. WCO 품목분류위원회 상정이 필요한 주제

지난 9월8일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학술 세미나에서도 다뤄진 주제이지만 레깅스의 품목분류에 대한 기준이 수립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레깅스는 과거 속옷으로 생각되었으나 활동복으로 기능을 하고 있어서 긴바지로 보는 견해가 많음. (제6104.62)



FTA 및 수출입 실무 안내

원산지 검증 대비 서류 보관 가이드라인

▶ 배경

선통관 후검증 체제에서는 관련된 자료의 보관(Record Keeping)이 필수적이며 미보관 또는 미제출 시 협정관세 적용배제 및 벌칙 등 부과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에게 기록보관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원산지 신인도를 제고하고 FTA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함

▶ 개요

원산지증명서 또는 증빙서류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협정 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FTA특례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서류를 포함하여 각 협정에서 정한 서류를 일정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된 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김정훈

관세사

jhkim@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컨설팅

원산지임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자료에 한정하지 않고 검증대상에 따라 증빙자료의 종류 및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제시된 증빙자료 외 기타의 자료 및 방법으로도 원산지임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미보관·미제출 및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원산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증빙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배제 및 FTA특례법에서 정한 벌금·과태료 등 행정벌이 부과될 수 있음

▶ 당사자별 필수 증빙자료

1.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

- 당해물품의 원산지증명서(신고서) 및 발급신청서류 사본
- 당해물품의 수출신고필증
- 당해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자료(사전심사서,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당해물품에 사용된 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직접 수입한 경우)
- 당해물품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납증, 송품장 등)
- 당해물품의 가격 증빙자료(판매 또는 구매 관련 대금 영수·지급증빙자료 포함)
- 당해물품의 운송관련 서류
- 당해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 관련 운송·보험·통관 등 부대비용 증빙자료
- 당해물품의 출납·재고관리 대장
- 당해물품과 관련한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원산지확인서·원산지소명서 등 확인서류
-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및 작성대장(수출자 자율증명)
- 인증수출자 인증서(인증수출자에 한함)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자료 및 증빙자료(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매출전표, 외환거래 증빙자료, 제조원가명세서, 제품수불부, 거래처별 매입 보조부, 국내매입 증빙자료 등)

2. 생산자

- 수출자 or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을 위해 작성·제공한 서류(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부분품 등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의 명의로 수입한 경우)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 근거자료(사전심사서,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당해물품의 생산된 형태로의 생산에 관한 기록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납증 등)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가격 증빙자료(판매 또는 구매 관련 대금 영수·지급 증빙자료 포함)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운송서류
- 당해물품의 공정을 증빙할 수 있는 생산, 제조, 가공 증빙자료
- 당해물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증명 서류
- 당해물품이 영역 밖에서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필요한 경우)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판매 또는 구매 관련 운송·보험·통관 등 부대비용 증빙자료
- 당해물품의 원가계산서 및 원재료명세서(HS, 소요량, 단가/중량, 원산지 등 원산지결정시 고려된 경우 필수)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재료생산자가 원산지증명을 위해 당해물품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및 당해 서류에 기재된 내용 확인 서류
- 당해물품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원산지확인서 서명카드 및 작성대장(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자료 및 증빙자료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매출전표, 외환거래 증빙자료, 제조원가명세서, 제품수불부, 거래처별 매입보조부, 국내매입 증빙자료 등)

3.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 수출자가 필수로 증빙하여야 하는 자료
-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
-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목분류 근거(사전심사서,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 장, 구매확인서, 기납증, 송품장 등)
-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가격 증빙자료(판매 또는 구매관련 대금 영수·지급 증빙 자료 포함)
- 당해물품의 공정을 증빙할 수 있는 생산, 제조, 가공 증빙자료
- 당해물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증명 서류

- 당해물품이 영역 밖에서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필요한 경우)
-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판매 또는 구매 관련 운송·보험·통관 등 부대비용 증빙 자료
- 당해물품의 원가계산서 및 원재료명세서(HS, 소요량, 단가/중량, 원산지 등 원산지결정시 고려된 경우 필수)
-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해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및 당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당해물품의 생산된 형태로의 생산에 관한 기록
- 당해물품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운송서류

4. 수입자

-수출국 발행기관, 수출자,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한 경우
FTA 특례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서류의 보관 및 제출

-수입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의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

FTA 특례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서류를 포함하여 한-미 FTA 협정 제6.17조 제2항 및 제 6.19조제4항제아호에 따라 수입자가 상품이 협정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의 보관 및 제출

▶ 원산지기준별 필수 증빙자료

1. 완전생산기준

- 당해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자료(사전심사사,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
-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증빙자료
- 당해물품의 재배, 채취, 어로 등 생산, 제조 공정 설명서 및 관련 기록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 확인서, 기납증, 송품장 등)

2. 세번변경기준

- 당해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자료(사전심사사,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HS, 원산지기재)
-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증빙자료

- 당해물품의 재배, 채취, 어로 등 생산, 제조 공정 설명서 및 관련 기록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 확인서, 기납증, 송품장 등)

3. 역내가치기준

- 당해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자료(사전심사사,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HS, 소요량, 단가, 원산지기재)
-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증빙자료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 확인서, 기납증, 송품장 등)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가격 증빙자료(판매 또는 구매 관련 대금 영수·지급 증빙자료 포함)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판매 또는 구매 관련 운송·보험·통관 등 부대비용 증빙자료)
- 당해물품과 관련한 판촉·마케팅·판매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포장비용, 비허용 이자비용 관련 증빙자료(순원가법 적용시)

▶ 보관 방법

- 1개의 원산지증명서에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를 일괄하여 원산지증명서별 1권(책)으로 편철하여 날짜순으로 보관
-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자료를 디스크 또는 이와 유사한 전산매체에 보관하되 관련 증빙자료와 원산지증명서와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관리번호 부여

▶ 자료보관 및 제출 위반시 제재규정

1. 협정관세 적용배제

- 정당한 사유없이 수입자, 상대국 수출자/생산자가 자료를 기한내에 미제출하거나 거짓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
- 제출한 자료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상대국수출자/생산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2. 벌금(2,000만원 이하)

- 정당한 사유없이 특례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특례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자

- 협정 및 특례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 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 사실과 다르게 신청/발급 등(300만원 이하)

3. 과태료(1,000만원 이하)

- 정당한 사유없이 특례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특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 개정 내용

(1)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제12조제2항, 제44조제2항)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받은 경우 인증 취소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



김 태 경

관세사

yhhan@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p>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 수출자가 <u>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u> <후단 신설></p>	<p>③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44조

현 행	개 정 안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過失)로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생략) 3. ~ 7. (생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현행과 같음)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인증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2)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에 농·어업인 추가(제13조)

(3) 관세청장이 지원하는 원산지 증명 절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사업의 대상을 현재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농·어업인까지 확대함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p> <p>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p>	<p>제13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p> <p>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제2항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 해당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 3.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 해당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

(4) FTA협정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제36조의2 신설)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보정이자를 징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 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한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36조의2(보정이자)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보정이자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6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정이자”라 한다)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세법」 제38조의2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후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p>

2. 시행일자

2024.01.01 시행 (단 제 36조의2의 신설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개정에 대한 의견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련하여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바로 취소하게 함으로써 부정행위 방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중소기업만이 아닌 관세무역 정보를 접하기 힘든 농·어업인 까지 법령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으로 추가하면서, FTA제도의 정당한 사용을 장려하였습니다.

또한 관세법을 준용하였던 보정이자 규정의 경우,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FTA특례법을 직접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